

WEMADE

위메이드 윤리강령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일자	제·개정 내용	작성자
1.0	12.12	전면 제정	-
1.1	22.07	일부 개정(일부 개정 및 윤리강령 적용범위 추가)	천은정

위메이드 윤리강령

우리 위메이드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 감동을 선사하는 기업이념을 적극 실천하며, "글로벌 고객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기업", "꿈을 실현하고 감동을 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선포한다.

제1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의 준수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건전한 기업 활동

- (1)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3) 경쟁사와의 비교 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 (4)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책임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 (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4. 부패방지과 윤리경영

- (1) 기업윤리와 상도이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2) 부패방지 법규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부정 청탁, 뇌물 수수 및 공여 등 사업상 이익이나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1)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6. 정치활동 금지

- (1)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 (2)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

- (1) 안전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 발생 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우리 위메이드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사명 완수와 성실한 업무 수행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 (2)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한다.
- (3) 임직원은 각종 법령 및 회사의 방침, 제반 사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시장규율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료 및 관련 부서 간의 상호협조와 보완으로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5)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및 주요 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준수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사 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수행

- (1)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소조직의 이익보다는 대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 (2) 임직원은 청렴을 존중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 (3) 임직원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한 영업, 자기 명의의 영업, 보수를 받고 타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5)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직무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

3.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 (1)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 (2) 임직원은 위메이드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 신용, 이익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 (3)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 과도한 주식투자 행위, 음주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상호존중의 건전한 조직문화

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소통의 원칙을 준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상하·동료 간에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괴롭힘 및 부적절한 간섭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하지 않는다.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 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자회사 포함)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공영한다.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 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2. 공동번영

- (1) 협력회사(자회사)와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 (1)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 (2)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 부정 청탁 금지

사업상 이익이나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업체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5. 기타 부정부패 행위의 금지

- (1)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2)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 (3)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 (4)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서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
- (5)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

1.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 회사는 재산 운용에 있어서 운용 재산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재산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회사는 법률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3.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적기 제공

- (1)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2) 회사는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한다.

4. 회계 처리의 투명성 유지

- (1)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 (2) 회사는 제반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법규에서 정한 각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재산 운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3)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 조성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임직원은 시장에 대한 공정성·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고객 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게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고 품질의 게임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1)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 (2)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 보호

- (1)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2)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3)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리

1.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 활동

- (1) 회사는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 (2) 회사는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회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 발전 및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 구현에 기여

- (1)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여 고용 창출과 납세 및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3) 회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형성된 이윤을 바탕으로 사회공익사업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4) 회사는 환경보호와 자연을 보존하는데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후손에 대한 환경 보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부 등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한다.

3. 정치활동에 관여 금지

-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장 윤리강령의 적용

1. 적용대상 및 준수의무

- (1) 본 윤리강령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 및 구성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강령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 (2)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은 인사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타인의 위반 사실을 제보한 자가 보복행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조치 후 징계 결정한다.

(부 칙)

- 1. 이 강령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차 개정 강령은 2022년 7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